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7. 2. .

발 의 자 : 서종수 위원 외 6인

1. 개정이유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

3. 예산조치 : 필요없음

4. 입법예고 : 필요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 개정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1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공무원”을 “구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를 “의장의 명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8조(총전의 제7조) 중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 공무원”을 “조례 이외의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96.3.2, '97.12.4, '98.11.27, '04.2.20, '06.5.18), 06.11.30)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단위:원)

지급기준액 구분	철운도임	선운박임	항운공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98.11.27, '00.2.17, '04.2.20)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단위: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 · 부의장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제1항관련(별표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되기 전 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u>동법 시행령</u>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 ----- ----- ----- 필요한 ----- -----.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활동자료의 수집·연구와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20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 ----- ----- ② ----- ----- ----- ----- -----. -- 1개월 ----- ----- ----- ----- ③ -----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 ----- -----.
제3조(월정수당) ① (생 략) ② 월정수당은 월 2,417,500원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	제3조(월정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개월 -----

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마포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한다.

제4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
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
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
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
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
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
공무원 여비지급의 예에 따른
다.

<신 설>

-----.
③ ----- 구 공무원-----

--.

제4조(여비) -----
----- 의장의 명에
따라 -----
-----.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 국내여비 지급기준
표에 따라 -----.
②-----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
-.

제8조(준용) -- 조례 이외의 의원
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
공무원 -----

-.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
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
급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
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
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